

본 통지는 귀하의 법적 권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드시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Jacinto Gomez Ovando et al v. Mountaire Farms Inc., et al.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동부 연방지방법원,
민사 사건 번호: 7:23-cv-00004-M-RJ

집단 및 공동소송 합의에 대한 통지서

To: <<EmployeeName>>
<<Address1>> <<Address2>>
<<City>>, <<State>> <<Zip>>

Re: Mountaire Farms Inc. 및 Mountaire Farms of North Carolina Corp.(이하 “Mountaire” 또는 “피고”)의 노스캐롤라이나주 내 닭고기 가공 공장에서 비면제 닭고기 가공직으로 근무한 직원들을 대표하여, Mountaire를 상대로 한 체불임금 청구와 관련된 소송 합의입니다.

귀하의 행동 여부에 관계없이, 귀하의 법적 권리는 본 합의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귀하의 선택사항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합의에 따른 귀하의 법적 권리 및 선택사항 요약:	
청구서 제출	합의금을 수령하시려면, 본 통지서와 함께 제공된 청구서를 정확히 작성한 후, 지시에 따라 합의 관리자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귀하는 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이, 공정 근로 기준법(FLSA) 및 노스캐롤라이나 임금 및 근로시간법(NCWhA)에 따른 청구권 포기에 법적으로 구속되며, 해제 대상에 포함된 청구에 관하여 Mountaire 및 그 면책 당사자들을 별도로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본 합의로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첨부된 청구서를 2025년 10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합의금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지만, NCWhA(노스캐롤라이나 임금 및 근로시간법)에 따른 귀하의 청구권은 여전히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FLSA(공정 근로 기준법)에 따른 청구권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예외는, 귀하가 이전에 <i>Jacinto Gomez Ovando et al v. Mountaire Farms, Inc., et al.</i> (민사 사건 번호: 7:23-cv-00004-M-RJ)에 참여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귀하가 <i>Jacinto Gomez Ovando et al v. Mountaire Farms, Inc., et al.</i> (민사 사건 번호: 7:23-cv-00004-M-RJ)에 참여하기 위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본 합의에 참여하기 위해 별도로 청구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 합의에서 귀하를 제외시키기	본 합의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경우, 아래 14항의 지침에 따라 스스로를 합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청구서를 제출하지 마세요. 오직 합의에서 제외를 요청한 사람만이 앞으로 NCWhA에 따른 별도의 소송이나 청구를 진행할 권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제외를 요청한 사람은 본 합의에 따라 NCWhA 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지만, 동시에 본 합의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의 제기	2020년 1월 10일부터 2024년 12월 20일 사이, Mountaire의 노스캐롤라이나 소재 닭고기 가공 공장에서 비면제 닭고기 가공직으로 근무하셨으며, 아래 14항의 지침에 따라 합의에서 제외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본 합의에 이의가 있는 사유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통지서에는 귀하의 권리 및 선택사항, 그리고 이를 행사하기 위한 마감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개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한 제안된 합의안을 잠정 승인했습니다. 이 문서는 법원이 승인한 공식 통지문입니다. 변호사로부터의 권유가 아닙니다.

귀하가 합의에 참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예상되는 합의금 지급액은 합의 관리자에게 문의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아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합의금은 법원이 본 합의를 최종 승인하고, 모든 항소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청구서를 제출한 개인에게 지급됩니다.

귀하가 이 통지서를 받은 이유는, 기록상 귀하가 2020년 1월 10일부터 2024년 12월 20일 사이에 Mountaire의 노스캐롤라이나 닭고기 가공 공장에서 비면제 가공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정보

1. 이 소송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요?

2023년 1월 10일, Jacinto Gomez Ovando 및 Maria del Carmen Peralta Baeza (이하 통칭하여 “대표 원고”)는 자신들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기타 직원들을 대표하여 Mountair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대표 원고는, Mountaire가 연방법인 공정 근로 기준법(FLSA) 및 노스캐롤라이나 임금 및 근로시간법(NCWha)을 위반하여, 모든 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적절한 초과근무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또한, 개인 보호 장비 및 닭고기 구매와 관련하여 급여에서 공제된 일부 항목들이 불법적이었다고 추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Mountaire는 FLSA 또는 NCWha를 위반하였다는 대표 원고들의 주장, 모든 근로 시간 및 청구된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적절히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표 원고들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는 주장 모두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Mountaire는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소송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본 청구들에 대한 합의에 동의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어느 일방의 손을 들어준 바 없습니다. 그러나 양측은, 어떠한 법적 책임이나 위법 행위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사건에 대한 합의안을 제안하였고, 법원은 이 제안된 합의에 대한 통지를 참여 자격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도록 승인하였습니다.

2. “집단소송”이란 무엇이며, “클래스 액션”이란 무엇이고, 누가 포함되나요?

FLSA(공정 근로 기준법)에 따라, 법원이 특정 사건을 “집단소송”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유사한 상황에 처한” 개인들이 모여 체불 초과근무 수당 및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단소송에서는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 소송에 “옵트인”한 개인들이 당사자 원고로 간주됩니다. 이들은 때때로 “옵트인 원고”라고 불립니다. 소송을 제기한 개인들은 “대표 원고”로 불리며, 자신들과 유사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다른 개인들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옵트인” 방식의 집단소송은, 참가자가 별도의 서면 동의 없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클래스 액션”과는 다릅니다. 클래스 액션에서는 “대표 원고”가 특정한 범위로 정의된 집단, 즉 “클래스”에 속한 모든 개인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이 해당 사건을 “클래스 액션”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의된 집단에 속한 모든 개인은 법원에 제외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클래스 구성원”이 됩니다. 연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사건을 때때로 “제23조 클래스 액션”이라고 부릅니다.

본 사건의 대표 원고인 Jacinto Gomez Ovando 및 Maria del Carmen Peralta Baeza는 이 사건을 연방법인 공정 근로 기준법(FLSA)에 따른 집단소송이자, 노스캐롤라이나 주법에 따른 클래스 액션으로 제기하였습니다. FLSA에 따른 제안된 집단소송의 범위에는, 2020년 1월 10일부터 2024년 12월 20일 사이에 Mountaire의

노스캐롤라이나 닭고기 가공 공장에서 비면제 닭고기 가공직으로 근무한 직원 중, 법원에 서면 동의를 제출하여 본 사건에 옵트인한 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원고들은, 2020년 1월 10일부터 2024년 12월 20일 사이에 Mountaire의 노스캐롤라이나 닭고기 가공 공장에서 비면제 닭고기 가공직으로 근무한 모든 직원을 하나의 집단으로 하여, 노스캐롤라이나 주법에 따른 클래스 액션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양 유형의 소송 모두에서, 대표 원고는 법원에 해당 사건을 클래스 액션 및/또는 집단소송으로 인증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해당 요청을 인용하는 경우, 동일한 법원이 본 사건에 대한 쟁점들을 모든 잠재적 옵트인 원고 및 클래스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동부 연방지방법원이 본 집단소송 및 클래스 액션에 대한 관할 법원입니다. 본 합의와 관련하여, 법원은 대표 원고의 집단소송 및 클래스 액션에 대해 오로지 합의 목적에 한하여 인증을 승인하였으며, 본 합의에 대한 최종 승인을 내리기 전에 참여 자격이 있는 집단소송 및 클래스 구성원에게 통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습니다.

3. 제안된 합의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집단소송 및 클래스에 대해 인증을 승인하였으며, 이들 집단에 해당하는 경우 첨부된 청구서를 제출하면 본 합의금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 **FLSA 집단소송 구성원:** 2020년 1월 10일부터 2024년 12월 20일 사이에 Mountaire의 노스캐롤라이나 닭고기 가공 공장 중 한 곳에서 비면제 닭고기 가공직으로 근무한 모든 직원.
- b) **제23조 합의 클래스 구성원:** 2020년 1월 10일부터 2024년 12월 20일 사이에 Mountaire의 노스캐롤라이나 닭고기 가공 공장 중 한 곳에서 비면제 닭고기 가공직으로 근무한 모든 직원.

4.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귀하가 본 합의에 참여할 자격이 있으며 실제로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 첨부된 청구서를 작성하여 2025년 10월 1일 이전의 우편 소인이 찍히도록 미국 우편을 통해 합의 관리자에게 적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과거에 *Jacinto Gomez Ovando et al v. Mountaire Farms, Inc., et al.* (민사 사건 번호: 7:23-cv-00004-M-RJ)에 참여하기 위한 동의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본 합의에 참여하기 위해 별도로 청구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로 인한 이익 - 얻는 것과 포기하는 것

5. 합의의 이익 및 조건은 무엇인가요?

당사자들은 총 7,260,000달러(“총합의금”)에 해당하는 합의에 동의하였습니다. 이 금액에는 주장된 체불 임금, 일반 근무 시간 수당, 초과근무 수당, 법정 손해배상금, 이자, 집단 소송 측 변호인의 변호사 수임료, 비용 및 경비, 대표 원고에게 지급되는 대표 원고 특별 보상금, 합의 진행을 위한 행정 비용, 및 기타 모든 합의 관련 지급금과 비용이 포함됩니다.

본 합의에 대한 최종 승인을 위한 심리(“최종 승인 심리”)가 열릴 예정입니다. 법원이 합의를 승인하고 귀하가 청구서를 기한 내에 적절하게 제출한 경우, 귀하는 합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합의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소득세 납부 의무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총합의금에서 집단 소송 측 변호인의 승인된 변호사 수임료, 비용 및 경비, 대표 원고에게 승인된 대표 원고 특별 보상금, 그리고 합의 절차 진행에 소요된 행정 비용이 지급된 후, 남은 금액(“순합의금”)은 모든 자격 있는 합의 클래스 구성원에게 분배됩니다. 각 구성원이 수령할 금액은, 피고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단 소송 측 변호인이 분석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개별 예상 합의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효한 청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모든 자격 있는 개인은, 순합의금 중 본인에게 배정된 몫(“개별 합의금”)을 수령할 권리를 갖습니다. 개별 합의금은 유효한 청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개인에게만 지급됩니다. 합의금 분배 절차는 법원이 승인하고 지정한 독립적인 제3자 합의 관리자에 의해 관리됩니다.

합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개인이 (이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개인에게 배정된 합의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이는 전체 합의금 총액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합의에서 제외되기를 요청한 개인에게 배정된 금액 중 청구되지 않은 잔액은 Mountaire의 소유로 유지되며, Mountaire가 합의 관리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본 합의에 참여하거나 남아 있는 경우, 어떤 청구권을 포기하게 되나요?

귀하가 본 합의에 참여하거나 합의에서 제외되기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특정 청구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각 제23조 합의 클래스 구성원은, 본 합의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스스로를 제외하지 않는 한, 또한 본인이 청구인인지 여부 및 개별 합의금을 수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알려졌든 알려지지 않았든, 관습법이든 법률이든, 연방법, 주법, 지방자치법, 법령, 조례, 규정 기타 일체의 법적 근거에 따라 발생하였든, 노스캐롤라이나 임금 및 근로시간법 (노스캐롤라이나 일반법 제95-25.1조 이하)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모든 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청구권 및 소송 원인을 포기하게 됩니다. 단, 공정 근로 기준법 (미국 연방법전 제29편 제201조 이하)에 따른 청구권은 제외됩니다. 해당 청구권의 포기에는, 가정상의 제23조 합의 클래스 구성원 또는 FLSA 집단소송 구성원이 본 소송에서 제기하였거나 제기할 수 있었던 청구권이 포함되며, 청구서 또는 수정된 청구서에서 주장된 사실 또는 정황에 기초하거나 이로부터 파생되었거나 관련된 모든 청구가 포함됩니다. 또한, 임금, 보너스, 커미션, 초과근무 수당, 휴가 수당, 퇴직 수당 및 이에 관련된 손해배상, 비용, 벌금, 법정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이자,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환급, 형평법상 구제 또는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나 기타 보상금의 미지급, 근무 시간의 기록 또는 인정 누락 등과 관련된 기타 모든 구제 청구를 포함합니다. 이는 특히 다음의 부당하거나 위법한 것으로 주장되는 청구를 포함합니다: (1) 모든 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2) 보수 및/또는 임금에서의 공제, (3) 최저임금 지급 의무 불이행, (4) 초과근무 수당의 산정 및/또는 지급 불이행, (5) 명시적 계약 또는 단체협약, 묵시적 계약 또는 약정의 위반, 또는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부당이득, 사기, 과실에 의한 허위 진술, 형평법상 금반언, 약속에 의한 금반언, 전용 이론에 따른 업무 수행 대금의 미지급, (6) 관련 임금 및 근로시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기록 유지 및 보관의무 불이행, (7) 최저임금 또는 초과근무 수당을 포함한 임금의 미지급을 근거로 한 어떠한 보상 또는 복리후생 계획, 제도, 약정 또는 합의에 따른 급부 또는 금액의 제공 불이행, (8) 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문제 제기 또는 항의에 따른 보복 행위. 본 단락에서 규정된 청구권 포기는 근로 시간 및 미지급 임금과 관련된 모든 연방법, 주법, 지방자치법상 법률상 청구권 및 관습법상 청구권을 포함합니다. 단, 이는 공정 근로 기준법(FLSA)에 따른 청구권이나, 법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기타 청구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위의 청구권 포기에 추가하여,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개별 합의금을 수령할 자격을 갖게 되는 모든 가정상의 FLSA 집단소송 구성원은, 공정 근로 기준법에 따라, 알려졌든 알려지지 않았든, 민사상 또는 형평법상 근거를 불문하고, 본 소송에서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청구권 및 소송 원인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에, 가정상의 제23조 합의 클래스 구성원 및 FLSA 집단소송 구성원이 본 소송에서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청구 중, 원고청구서 또는 수정된 원고청구서에 기재된 사실 및 정황에서 비롯되었거나 이에 근거하거나 관련된 모든 청구가 포함되며, 구체적으로는 임금, 보너스, 커미션, 초과근무 수당, 휴가 수당, 퇴직 수당,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모든 손해배상, 비용, 벌금, 법정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이자,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환급, 형평법상 구제 또는 근로에 대한 보상금의 미지급, 근로 시간의 정확한 기록 또는 반영의무 불이행 등과 관련된 기타 모든 구제 청구가 포함됩니다. 이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부당하거나 위법한 것으로 주장되는 사항에 대해 FLSA(공정 근로 기준법)상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청구를 포함합니다: (1) 모든 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2) 보수 및/또는 임금에서의 공제, (3) 최저임금 지급 의무 불이행, (4) 초과근무 수당의 산정 및/또는 지급 불이행, (5) 명시적 계약 또는 단체협약, 묵시적 계약 또는 약정의 위반, 또는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부당이득, 사기, 과실에 의한 허위 진술, 형평법상 금반언, 약속에 의한 금반언, 또는 전용 이론에 따른 업무 수행 대금의 미지급, (6) 관련 임금 및 근로시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기록 유지 및 보관 의무 불이행, (7) 최저임금 또는 초과근무 수당을 포함한 임금의 미지급을 근거로 한 어떠한 보상 또는 복리후생 계획, 제도, 약정 또는 합의에 따른 급부 또는 금액의 제공 불이행, (8) 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문제 제기 또는 항의에 따른 보복 행위. 본 문단에 포함된 청구권 포기에는 FLSA(공정 근로 기준법)에 근거한 모든 청구가 포함되며, 법률상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그 외의 청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집단소송 측 변호인, 대표 원고, 합의 관리자에 대한 보수 및 보상

7. 집단소송 측 변호인은 누구인가요?

본 합의와 관련하여, 법원은 다음의 변호사들을 집단소송 측 변호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Gilda Adriana Hernandez 변호사
Hannah B. Simmons 변호사
Matthew S. Marlowe 변호사
THE LAW OFFICES OF GILDA A. HERNANDEZ, PLLC
(법률사무소)
215 S. Academy Street
Cary, NC 27511
(919) 741-8693
ghernandez@gildahernandezlaw.com
hsimmons@gildahernandezlaw.com
mmarlowe@gildahernandezlaw.com
www.gildahernandezlaw.com

본 사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집단소송 측 변호인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집단소송 측 변호인이 귀하를 대리하여 활동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선택에 따라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비용은 전적으로 귀하 본인의 부담입니다.

8. 변호사 수임료, 비용 및 경비가 청구되었나요?

예. 집단소송 측 변호인은 본 사건에서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보상 및 소송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총합의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미화 2,420,000달러)의 지급 승인을 법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법원은 이보다 적은 금액을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집단소송 측 변호인의 해당 요청의 적정성에 대한 최종 결정은, 법원의 최종 공정성 심리에서 이루어집니다. 변호사 수임료, 비용 및 경비는 귀하의 개별 합의금에서 공제되지 않지만, 귀하에게 배정된 해당 수임료의 비례 금액은 귀하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미국 국세청(IRS) 양식 1099-Misc에 보고됩니다. 집단소송 측 변호인의 수임료 및 비용은 귀하의 지급액이 산정되기 전에 총합의금에서 지급됩니다.

9. 대표 원고는 추가 지급을 받나요?

예, 법원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각 대표 원고는 자신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다른 직원들을 대표하여 본 소송을 제기한 점, 대표 원고로서의 협조 및 기여, 그리고 피고에 대해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청구권에 대한 포괄적 해제를 제공한 점을 인정받아, 자신에게 15,000달러의 대표 원고 특별 보상금을 승인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법원은 이 금액을 승인하지 않거나, 이보다 적은 금액을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대표 원고 특별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에 대한 최종 결정은 법원의 최종 승인 심리에서 이루어집니다. 대표 원고 특별 보상금은 귀하의 잠재적인 합의금이 산정되기 전에 총합의금에서 지급됩니다.

10. 합의 관리자의 비용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본 합의의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귀하의 잠재적인 합의금이 산정되기 전에 총합의금에서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합의에 대한 선택 사항 – 청구서 제출

11. 합의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청구서를 기한 내에 정확히 작성하고 서명한 후, 본 통지서와 함께 제공된 선불 우편 봉투를 사용하여 미국 우편을 통해 합의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서가 기한 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작성 완료된 서류가 2025년10월 1일 까지의 우편 소인이 찍힌 상태로 합의 관리자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청구서를 분실하거나 잘못 보관하였거나 새로 필요한 경우, 1-(888) 330-3975 번으로 합의 관리자에게 전화하여 청구서 사본을 새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2.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이 본 합의를 승인하는 것을 전제로, 귀하의 합의금은 Mountaire가 제공한 재직 기간 및 기타 급여 관련 정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귀하가 수령할 정확한 합의금 액수를 확인하려면, 합의 관리자에게 1-(888) 330-3975 번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합의금은 다음의 두 가지 금액으로 분리되어 지급됩니다. 전체 합의금의 50%는 소송에서 주장된 임금 관련 손해배상 청구에 할당되며, 나머지 50%는 법정 손해배상 및 기타 구제에 관한 청구에 할당됩니다. 체불 초과근무수당 및 기타 임금 관련 손해배상 청구에 할당된 금액은, 정규 급여와 동일하게 관련 세금 공제 및 기타 법적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임금 청구에 할당된 금액은 IRS 양식 W-2에 따라 보고됩니다. 법정 손해배상 및 기타 구제에 할당된 금액은 비임금 소득으로 간주되며, 해당되는 경우 IRS 양식 1099에 따라 보고됩니다.

13. 지급은 언제 받게 되나요?

귀하가 본 합의에 참여할 자격이 있고, 청구서를 기한 내에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 합의가 발효된 날로부터 약 21일 후 또는 그 직후 가능한 시점에 귀하에게 합의금 수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다만 합의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합의 클래스 구성원들에게 이의 제기 또는 제외 요청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하며, 법원이 합의의 공정성을 심리하고 최종 승인을 부여하는 심리를 열어야 하고, 해당 최종 승인 명령에 대한 항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항소 절차가 종결되어야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수표를 우편으로 수령하시면 즉시 확인하시고 현금으로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표 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수표를 현금화해야 합니다. 180일이 지나면 해당 수표는 무효처리됩니다.**

합의에 대한 선택 사항 – 합의에서 제외되기

14. 합의에서 제외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하가 제23조 합의 클래스 구성원에 해당하며 본 합의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경우, 합의에서 제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합의에서 제외를 선택한 경우, 본 합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상실됩니다. 합의에서 제외되기 위한 마감일은 2025년10월 1일 입니다. *귀하가 Jacinto Gomez Ovando et al v. Mountaire Farms, Inc., et al. (민사 사건 번호: 7:23-cv-00004-M-RJ)에 참여하기 위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본 합의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이 마감일은 최종 기한이며, 마감일 이전 소인이 찍히지 않았거나 제출되지 않은 양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의에서 제외될 경우, 어떠한 지급금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합의에서 제외되기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합의에서 제외되기를 명시한 서면 진술서를 합의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제외 요청서의 상단에는 다음 문구를 명시해야 합니다: “*Jacinto Gomez Ovando et al. v. Mountaire Farms, Inc., et al.* 합의에서의 제외 요청”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서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모든 제외 요청서는 반드시 미국 일반우편으로 보내야 하며, 소인은 2025년10월 1일 까지 찍혀 있어야 합니다.

Jacinto Gomez Ovando et al v. Mountaire Farms, Inc., et al.

Settlement Administrator

c/o CPT Group, Inc.

50 Corporate Park,

Irvine, CA 92606

이메일: GomezOvandoNCChickenProcessingLawsuit@cptgroup.com

웹사이트: www.GomezOvandoNCChickenProcessingLawsuit.com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합의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제외 요청서에 필수 정보를 포함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제23조 합의 클래스 구성원의 일원으로 남게 되며 최종 판결에 구속됩니다.

유효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제외를 요청한 경우, 귀하는 본 사건에 대한 어떠한 최종 판결에도 구속되지 않으며,

Mountaire를 상대로 NCWhA에 따른 개별 청구를 제기하거나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귀하의 Mountaire에 대한 새로운 소송 제기에 별도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안에 대한 이의 제기

15. 합의안에 반대하거나 법원에 본 합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알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합의에서 제외를 요청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3조 합의 클래스 구성원의 일원인 귀하는, 본 합의의 조건, 집단소송 측 변호인의 보수, 비용 및 경비 요청, 그리고 원고의 대표 원고 특별 보상금 수령 요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이 합의를 승인한 경우, 귀하는 본 합의를 통해 면책되는 사건과 관련된 개별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법원이 내리는 최종 판결 및 면책, 그리고 모든 명령에 구속됩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원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귀하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나,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해당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및 기타 경비는 귀하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려면, 귀하가 본 합의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진술서를 법원, 집단소송 측 변호인, 그리고 Mountaire 측 변호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진술서 상단에는 본 소송의 명칭 및 사건번호인 “*Jacinto Gomez Ovando et al v. Mountaire Farms, Inc., et al.* (민사 사건 번호: 7:23-cv-00004-M-RJ)”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귀하의 성명, 주소, 귀하가 제기하는 각 이의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귀하가 별도의 변호인을 선임하였는지 여부를 명시하고, 선임한 경우 해당 변호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귀하는 본 이의 제기서의 사본을 법원, 집단소송 측 변호인, 그리고 Mountaire 측 변호인에게 아래 주소로 2025년10월 1일자 소인이 찍힌 미국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법원

법원 서기
미국 연방 지방법원
노스캐롤라이나주 동부 지구
PO Box 25670
Raleigh, NC 27611

피고 측 대리인

Joshua Waxman
LITTLER MENDELSON, P.C.
815 Connecticut Avenue, NW, Suite 400
Washington, DC 20006-4046

Michael S. McIntosh
LITTLER MENDELSON, P.C.
1800 Tysons Blvd., Suite 500
Tysons Corner, VA 22102

Jerry H. Walters, Jr.
LITTLER MENDELSON, P.C.
620 South Tryon Street, Suite 950
Charlotte, NC 28202
피고 대리인 변호사

집단소송 측 변호인

Gilda A. Hernandez 변호사
Hannah B. Simmons 변호사
Matthew S. Marlowe 변호사
THE LAW OFFICES OF GILDA A. HERNANDEZ, PLLC (법률사무소)
215 S. Academy Street
Cary, NC 27511
원고 대리인 변호사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 제20항에 설명된 공정성 심리에 직접 출석하거나 본인의 변호인을 통해 출석할 수 있습니다(필수는 아님).

정해진 기간 내에 적절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제23조 합의 클래스 구성원은 이의 제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합의 승인에 대해 항소하거나 최종 승인 심리에서 발언할 권리를 갖지 않게 됩니다.

법원은 적시에 제출된 이의 제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이 반드시 해당 이의 제기를 근거로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이 귀하의 이의를 검토한 후 이를 기각하는 경우, 귀하는 여전히 본 합의 및 위 6항에 설명된 청구 포기에 따라 구속됩니다.

16.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청구 양식을 제출해야 하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에 이의를 제기할 의사가 있으면서도 합의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위 9항에서 설명한 청구 양식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귀하의 이의 제기에 불구하고 본 합의를 승인하고, 귀하가 합의금 수령에 필요한 양식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귀하는 합의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이전에 해당 소송에 참여하기 위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17. 이의 제기와 제외 요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의 제기란 귀하가 본 합의의 일부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의 제기는 합의에 남아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서 자신을 제외 요청하는 것은 귀하가 본 합의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 알리는 것입니다. 합의에서 제외를 요청한 경우, 해당 사건이 더 이상 귀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합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없습니다.

합의에 대한 선택 사항 –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

18.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귀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한 *Jacinto Gomez Ovando et al v. Mountaire Farms, Inc., et al.* (민사 사건 번호: 7:23-cv-00004-M-RJ)에 참여하기 위한 동의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본 제안된 합의로부터 어떠한 금전도 수령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여전히 위 6항에서 논의된 청구 포기 대상 청구권에 대한 포기의 구속을 받게 됩니다.

법원의 공정성 심리

19. 법원이 합의를 승인할지 여부를 언제, 어디서 결정하나요?

법원은 본 합의와 관련된 최종 승인 심리(일명 공정성 심리)를 **2025년 11월 3일 오후 2시에 개최합니다**. 이 심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동부 연방지방법원, Alton Lennon 연방법원 제1법정 (2 Princess Street, Wilmington, NC 28401)에서 열리며, 판사 Richard E. Myers, Are II가 주재합니다. 이 심리에서 법원은 제안된 합의, 즉 집단소송 측 변호인에게 지급될 수입료, 소송 비용, 경비 및 대표 원고에게 수여될 수 있는 대표 원고 특별 보상금을 포함한 전체 합의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법원은 심리 중 또는 심리 이후에 합의의 최종 승인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심리의 일시 및 장소는 별도의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 심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아니요. 본 심리에 반드시 참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집단소송 측 변호인이 법원이 제기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 응답할 예정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심리에 참석하게 할 수도 있으나, 이는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합의에 대한 서면 이의가 접수된 경우, 법원은 해당 심리에서 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 법정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직접 발언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최종 승인 심리에서 발언을 요청한 시기 적절한 이의 제기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21. 심리에서 발언할 수 있나요?

시기 적절하게 유효한 이의 제기를 제출한 경우, 법원에 공정성 심리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Jacinto Gomez Ovando et al. v. Mountaire Farms, Inc., et al.*에서의 집단합의 최종 승인 심리에 출석하겠다는 의사표시 통지서”임을 명시한 서신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서신에는 반드시 귀하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출석 의향서는 **2025년10월 1일** 자 우편 소인 기준으로 늦지 않게 발송되어야 하며, 법원 서기, 집단소송 측 변호인, 그리고 Mountaire 측 변호인에게 위 15항에 기재된 주소로 각각 보내야 합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합의에서 제외된 개인이 심리에서 발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보복 또는 차별 금지

22. 현재 피고 측 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인데, 이번 합의에 참여하기로 하면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나요?

예. 고용주는 이번 합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직원에게 보복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Mountaire는 귀하가 본 소송이나 이번 합의에 참여하기로 했는지 여부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든 귀하를 차별하거나 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추가 정보

23. 합의에 대한 더 많은 세부사항을 알 수 있나요?

예. 이 공지는 제안된 합의의 기본적인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합의에 대한 추가 정보는 합의 관리자 및/또는 집단소송 측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 7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를 원하실 경우, 합의 관리자에게 무료전화 1-(888) 330-3975 번으로 연락하거나, 아래 주소로 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Jacinto Gomez Ovando et al v. Mountaire Farms, Inc., et al.* Settlement Administrator, c/o CPT Group, Inc., 50 Corporate Park, Irvine, CA 92606 또는 웹사이트 www.GomezOvandoNCChickenProcessingLawsuit.com 을 방문하세요. 또한 집단소송 측 변호인의 연락처 정보는 7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합의와 관련된 문의는 법원, 서기국, Mountaire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향후 참조나 우편 수령을 위해 이름 또는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시는 경우, 새로운 주소를 합의 관리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통보는 아래 주소로 서면 발송하시면 됩니다:

Jacinto Gomez Ovando et al v. Mountaire Farms, Inc., et al.
Settlement Administrator
c/o CPT Group, Inc.
50 Corporate Park
Irvine, CA 92606

이메일: GomezOvandoNCChickenProcessingLawsuit@cptgroup.com
웹사이트: www.GomezOvandoNCChickenProcessingLawsuit.com